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7. 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71호로 2015년 6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영등포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 보호, 안전관리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 나. 구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안 검토(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 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 마. 각종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및 초동대처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규정(안 제30조, 제31조)
- 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기준 정비(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 사. 재난예방 및 대비 사항 신설(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 아. 재난대응 및 복구 사항 신설(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 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신설(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대상 사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평가 실시(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실시(의견 없음)

바. 입법예고 : 2015. 5. 21 ~ 6. 10(20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 12. 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국민안전처의 통합 표준 조례안 등을 근거로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은 총 5장 49개 조문으로 구성

-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와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재난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조언·지원 및 협력하도록 함.

-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 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자문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사항을 상위법과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정비함.

-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 조정 등 심의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 2)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상황 관리 및 동원 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토록 함.
- 3)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15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정비함.

○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및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재난상황을 단계별로 재난예방 및 대비(안 제3장), 재난대응 및 복구(안 제4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안 제5장)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상황 조치와 대응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예방, 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2014.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3.8.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8.6.>]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

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⑧ 국민안전처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⑨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본조신설 2013.8.6.]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시·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는 재난의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며, 재난유형별 발령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4.12.30.>

③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면 즉시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④ 중앙대책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8.6.>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

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국무총리 또는 국민안전처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일 미지정] 제77조제1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2.5.][별표 1의3] <개정 2014.11.19.>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6. 옥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국민안전처	1.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정부중요시설 사고 3. 화재·위험물 사고,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5.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 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6.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제46조(예보·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4.2.5.>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
로 예상되어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예보 또는 경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2.5.>

1. 전국 단위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보·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
부장 또는 수습본부장(수습본부장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별표 1의3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한정한다)

2. 지역 단위의 예보·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아닌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난의 예보·경보를 발령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전문개정 2010.12.7.]